

第 27 回達西區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附錄) 第 1 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目 次

- 1.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面
- 2. 大邱直轄市達西區洞의名稱과區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9 面
- 3. 大邱直轄市達西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23 面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 - 27
----------	---------

제안년월일 : 1994. 7.

제안자 : 김영수의원의외 5인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효율화와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15조 관련 별표4, 별표5, 별표6 지방의원의 일비 및 국내외 여행여비의 지급 범위에 관한 규정이 94년 7월 6일 대통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조정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의원일비는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증액
-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각각 [별표1]과 같이 증액.
- 국외여비중 숙박비, 식비를 여행지 등급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증액 조정.

3. 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5 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u>식탁료</u> 로 구분한다.	제 5 조(여비의 종류) ①(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6 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u>30,000원</u> 으로 한다.	제 6 조(일비지급기준) <u>50,000원</u>
[별표 1] (“별지1”과 같음)	[별표 1] (“별지 3”과 같음)
[별표 2] (“별지2”와 같음)	[별표 2] (“별지 4”와 같음)

“별지 1”

547002?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 7 조 제 1 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 장 ·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갑 지	갑 지	갑 지	800
					5,000	17,000	11,000	
					을 지	을 지	을 지	
의 원	2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갑 지	갑 지	갑 지	800
					4,500	14,000	10,500	
					을 지	을 지	을 지	
					4,000	11,500	9,000	

〈비 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2”

(규정)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 7 조 제 2 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가등급 100	가등급 53	140	170	195
					나등급 25	나등급 70	나등급 46			
					다등급 25	다등급 60	다등급 40			
					라등급 25	라등급 40	라등급 33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0	가등급 83	가등급 48	130	155	180
					나등급 20	나등급 66	나등급 42			
					다등급 20	다등급 50	다등급 36			
					라등급 20	라등급 33	라등급 30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나. 나등급

(1) 아세이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다. 다등급

- (1) 아세아·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희랍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네시아, 버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3” (가/라/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 7 조 제 1 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반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운 임	현지교통비 (1 일 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u>6,500</u>	<u>20,700</u>	<u>11,000</u>
의 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u>6,500</u>	<u>16,200</u>	<u>10,500</u>

《비 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요금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요금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을 말하며, 당해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4”

2426057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 7 조 제 2 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가등급 130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25	나등급 90	나등급 78			
					다등급 25	다등급 72	다등급 58			
					라등급 25	라등급 62	라등급 49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20	가등급 114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20	나등급 74	나등급 59			
					다등급 20	다등급 55	다등급 44			
					라등급 20	라등급 46	라등급 37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온, 우간다, 코트디부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 (3) 유럽주 :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과아이,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위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